<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>

1.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

1) 입소정원은 시설에 규정한 정원에 따라 운영하며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다.

- 시설급여 : 44명

2) 입소 대상 : 장기요양등급 1~5등급(시설급여) 판정을 받은 자

3) 모집 방법 : 지자체의 추천 및 자체홍보를 통해 모집

2.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

1) 계약 당사자 : 천안메디케어요양원 원장, 신원인수인(주보호자)

2) 계약기간 :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내로 하며,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에 따라 재계약함

3) 계약목적 :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시설급여 및 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

4) 계약방법 :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 후 1부씩 보관

5) 계약의 해제

①입소자가 시설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, 의료서비스 및 일상 생활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등으로 입소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판단될 때

②입소자가 상습적인 주벽, 폭행 등으로 타인에게 심한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주의 및 경고를 줄 수 있으며, 이에 따르지 않을 때

③입소자가 치매 또는 중풍 등 중증질환으로 인하여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등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 할 수 있다.

3. 월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

1) 법정급여 1일 단가 (2025.1.1기준)

- 1등급 : 90,450원 - 2등급 : 83,910원 - 3~5등급 : 79,240원

2) 비급여 1일 단가

- 11,100원(식사 재료비3식)

3) 월이용료(30일 기준 / 비급여 포함)

- 1등급 : 일반(20%) 839,700원 / 감경(12%) 622,620원 / 감경(8%) 514,080원
- 2등급 : 일반(20%) 800,460원 / 감경(12%) 599,080원 / 감경(8%) 498,390원
- 3등급 : 일반(20%) 772,440원 / 감경(12%) 582,270원 / 감경(8%) 487,180원

* 급여단가 및 본인일부부담금은 "장기요양위원회"가 결정, 고시하는 변동된 수가 적용

* 4등급 및 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 이용 시 3등급 급여비용 산정